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4. 3.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 완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원방법) 제2항 제1호 중에서, ‘방식으로 한다’를 ‘방식으로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로 수정한다.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5조(지원방법) 제2항 제1호 중에서,

‘방식으로 한다’ 를, ‘방식으로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명 :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구미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특수학교에 학교무상급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급식 경비 지원을 통해 성 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우수농수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 라 구미시내 학교 등 에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함으 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 신발달 및 친환경 농 ·수·축산물의 소비 를 촉진시킴으로써 친 환경 농·수·축산물 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제2조(정의) ----- ----- -----. 1. “친환경 학교급	제2조(정의)(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함은 제1조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
조에 의한 급식대상
의 학교와 「유아교
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
는 급식을 말한다.

2. · 3. (생 략)

4. “우수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
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
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
선한 농·축·수산
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
공한 식품으로서 공
급과 유통이 투명하
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
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

식” 이란 -----

제4조의 대상시설에
서 지원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친환경---
-----.

2. · 3. (현행과 같음)

4. “친환경 농·수·
축산물” 이란 -----

--- 농·수·축산물

-----.

가. 「농수산물 품
질관리법」-----

2. · 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산물 · 이력추적 관리 농산물 · 지 리적표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 ----- ----- -----	
나. 「친환경농업육 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 하는 친환경농산 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 --	나.(개정안과 같음)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 리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 을 적용하는 작 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써 「축 산법」에 따른 등 급판정 결과 쇠고 기는 육질등급 2 등급 이상, 돼지 고기는 육질등급 1등급 이상, 닭고 기 및 달걀은 품 질등급 1등급 이 상인 축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 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중점관리기 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다.(개정안과 같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마. (개정안과 같음)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바. 경상북도지사 - ----- -----	바. (개정안과 같음)
사. (생략)	사.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신설>	아.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개정안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농업인 등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으로 수급되	6. (개정안과 같음)

	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 위 내에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① ----- ----- 친환경 경 농·수·축산물-- ----- ----- ----- -----.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 ·축·수산물을 우선 적으로 구매할 수있다.	② ----- ----- ----- 농·수 ·축산물----- -----.	② (개정안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 ----- -----.	제4조(지원대상)(개정 안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 이집	3.(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 (현 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 되, 학교급식지원센 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 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 4. (생략)

③ 시장은 무상급식과 급식경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④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와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② -----

-----.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
친환경 학교급식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

친환경 농·수·축산물 -----

②(개정안과 같음)

1. -----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개정안과 같음)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 및 무상급식 경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u>우수식재료를</u> 우선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 ----- ----- ----- ----- ----- ----- <u>우리 지역</u> <u>친환경 농·수·축산</u> <u>물을</u>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u>농·축·수산물</u> 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 <u>우리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u>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청에 따른 급식 경비 및 <u>우수 농·축·수산물</u>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학교 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하 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하여 <u>15인</u> 이 내로 하며, 위원은 당 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 원으로 구성한다. 1. ~ 9. (생략) <u>10. 식생활교육 전문 가</u> 11. (생략)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 <u>1인</u>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간사 <u>1인</u>은 관 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 ③ (생략)	----- -- <u>친환경 농·수·축 산물</u> ----- ----- ----- ----- ----- ----- ----- ----- ② ----- ----- <u>15명</u>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시설 추천인</u> 11. (현행과 같음) ③ ----- ----- <u>1명</u> - ----- ----- <u>1명</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개정안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	--	--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u>농·축·수산물</u>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 ----- ---<u>농·수·축산물</u>--- ----- ----- ----- -----.	④ (개정안과 같음)
---	--	--------------------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미시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급식”이라 함은”을 ““친환경 학교급식”이란”으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을 “제4조의 대상시설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수 식재료”라 함은”을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란”으로, “농·축·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제2조제4호바목 중 “생산자단체”를 “경상북도지사”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글루타민산나트륨(MSG)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농업인 등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으로 수급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축·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인공방사성 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수·축산물로 공급한다.

제5조제3항 중 “급식경비”를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식재료”를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우수식재료를”을 “우리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축·수산물”을 “우리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우수 농·축·수산물”을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인”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시설 추천인

제8조제3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농·축·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